

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(제1조의6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시설·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는 것
 - 가. 예보용 고성능컴퓨터(계산노드 160코어, 저장용량 500TB 이상)
 - 나. 대기질 수집·분석 서버(계산노드 16코어, 저장용량 500TB 이상)
 - 다. 대기오염 정보 제공 서버(계산노드 16코어, 저장용량 50TB 이상)
 - 라. 대기질 예보 지원 시스템(측정 및 모델 결과표출 모듈 탑재)
 - 마. 그 밖에 영상회의 장비, 멀티스크린 등 대기질 분석·예보를 위한 시설
2.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갖추는 것
 -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
 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화공, 대기관리 또는 기상예보 분야 기술사
 - 2) 환경공학, 대기환경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, 대기과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3) 대기질 예보 분야(기상, 대기측정, 배출량 또는 대기모델 관련 분야)의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
 -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화공, 화학분석, 대기환경 또는 기상 분야 기사
 - 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화공, 대기환경 또는 기상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 관련 분야(대기환경, 화학 또는 기상 관련 분야)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화공, 화학분석, 대기환경 또는 기상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대기 관련 분야(대기환경, 화학 또는 기상 관련 분야)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공학, 대기환경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 또는 대기과학 관련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이상